

신용정보활용체제

제정 2019. 02. 01.

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」 제31조에 따라 당사의 신용정보활용체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.

1.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

1. 이용목적

- 가.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판다.
- 나. 마케팅
- 다. 집합투자재산 등 투자자재산 운용
- 라.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
2.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- 가. 식별정보 :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, 기업 및 법인의 상호, 사업자-법인 등록번호, 대표자 성명 등
- 나. 신용거래정보 : 기업 및 법인의 신용거래정보 (투자일임재산, 회사채, 기업어음의 거래 및 보유내역 등)
- 다. 금융질서문란정보 :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
- 라. 신용능력정보 : 개인의 직업, 재산·채무·소득의 총액, 납세실적, 회사의 개황,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, 재무상태,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,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
- 마. 공공기록정보 : 국세·지방세·관세·과태료·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,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,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,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,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

2. 제공대상,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1. 신용정보 제공대상

- 가. 관계법령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
- 나. 관계법령에 의해 제공 가능한 기관 등

2.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

관계법령에서 정한 목적에 한함

3.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식별정보, 신용거래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, 신용능력정보, 공공기록정보 중 관계법령에 의해 제공 가능한 정보

3. 보유 및 이용기간, 신용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

1. 보유 및 이용기간

관계법령에 의해 보유 가능한 기간 및 고객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제공 중단을 요구한 때까지 보유 및 이용

2.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

종이 문서에 기록, 저장된 신용정보는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며, 전자적 파일의 경우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

4.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

수탁기관	위탁업무의 내용
신한아이타스(주)	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처리
한국자산평가(주)	전산장비 등에 대한 관리, 운영

5.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

1. 본인 신용정보 제공·열람 청구권

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고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 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 할 수 있음

2. 본인 신용정보 정정 청구권

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음

3.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

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

4. 개인신용정보 제공·이용 등의 철회권

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서면 등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

6.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

1. 소 속 : 준법감시인
2. 성 명 : 상무 전용우
3. 연락처 : 02-2039-9954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본 체제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